

# 보건실 운영 규정

제정 2013. 7. 1.      개정 2014. 3. 1.  
개정 2017. 3. 1.      개정 2017. 5. 2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경대학교 보건실(이하 “보건실”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학생과 교직원의 다양한 정신적, 신체적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경대학교 다예관 내에 보건실을 둔다.

② 보건실에는 실장을 두도록 하되 교학처장이 이를 겸하며, 간호사면허증을 갖춘 전문인력을 둔다.  
<개정 2014.3.1., 2017.5.23.>

③ 보건실에는 필요에 따라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④ 보건실에는 별도의 안정실을 둔다.

**제3조(업무)** 보건실에는 교직원 및 학생의 보건관리와 진료 및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질병의 예방지도
2. 응급처치
3.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활동에 관한 사항
4. 학생활동에 필요한 의약품 지원에 관한 사항
5. 대학보건사업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6. 기타 교내 외 활동을 위한 보건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반사항

**제4조(이용수칙)** 보건실 이용학생은

1. 목적을 분명히 말하고 정숙하고 침착하게 행동한다.
2. 환자 외의 출입은 담당자의 허락을 받는다.
3. 본인이 오도록 하며 다른 사람을 보내어 약을 타지 않도록 한다.
4. 가능한 쉬는 시간을 이용하여 수업에 결손이 없도록 한다.
5. 안정실을 이용하려면
  - 가. 1~2시간 안정으로 회복될 수 있는 경우
  - 나. 귀가하기가 힘든 경우
  - 다. 질병으로 인하여 조퇴허락을 기다리는 경우
  - 라. 졸도, 빈혈, 심한 외상인 경우

**제5조(건강증진대학 운영위원회)** ① 보건실의 업무 중 건강증진 관련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건강증진대학 운영 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은 교학처장(보건실장 겸직)으로 하며, 총장이 위촉하는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교학처(학생팀) 직원으로 한다.

⑤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 신설 2017.3.1.]

[중전 제5조는 제7조로 이동 <2017.3.1.>]

### **제6조(건강증진대학 운영위원회 기능)**

1. 건강지향적인 캠퍼스 조성

2. 재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생활 실천 유도

3. 건강증진 대학으로의 이미지 제고

4.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건강증진 도모

5. 기타 재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본조 신설 2017.3.1.]

[중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17.3.1.>]

**제7조(재정)** 보건실의 재정은 대경대학교 교비회계에서 정한 예산과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17.3.1.>]

**제8조(보수)** 보건실의 운영과 학생 보건진료를 위해 위촉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17.3.1.>]

**제9조(회계연도)** 보건실의 회계연도는 학년도로 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17.3.1.>]

**제10조(규칙의 개정)** 이 규칙은 총장 결재를 받아 개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17.3.1.>]

**제11조(보칙)**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리에 따른다.

[제9조에서 이동 <2017.3.1.>]

①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이 규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이 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이 규칙은 2017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